

# 예산총칙

2017년도 본예산

제 1 조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330,228,953	9,906,869
일반회계	302,535,822	9,076,075
특별회계	27,693,131	830,794
기타특별회계	27,693,131	830,794
농어촌소득금고사업특별회계	1,897,887	56,937
섬진강댐특별회계	5,820,000	174,600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2,717,000	81,510
옥정호상수원보호구역관리특별회계	4,439,203	133,176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418,093	12,543
기반시설특별회계	82,807	2,484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1,281,534	338,446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036,607	31,098

제 2 조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세입 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2017년도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없음」으로 한다

제 4 조 2017년도 지방채 발행한도액은 「8,100,000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2017년도 일반회계 예비비는 「5,436,334천원」과 같다

제 6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